



2014년 보험산업 회고(Ⅱ): 제도 변화

변혜원 연구위원

요약

■ 2014년에 있었던 보험 관련 제도 변화는 크게 소비자 보호 및 보험산업에 대한 신뢰 제고를 위한 조치, 다양한 상품 개발 및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 개선, 노후소득 및 사적연금 활성화를 위한 제도 도입, 보험회사 재무건전성 제고 유도를 위한 제도 개선, 보험회사 자산운용규제 완화 등으로 정리될 수 있음.

■ 2014년에는 무엇보다도 소비자 보호 및 신뢰 제고를 위해 모집질서 건전화¹⁾, 보험상품 공시 강화 및 판매채널 다변화, 보험사기 및 보상행위 관련 규제 강화와 관련된 제도 변화들이 있었음.

- 우선 영업행위 건전화를 위해 설계사 모집이력 관리시스템을 도입하고, 대형 법인보험대리점(500인 이상)의 경영공시를 강화함.(보험업감독규정 개정, 2014년 4월부터 시행)²⁾
- 보험안내자료 간소화, 보험안내자료에 대한 이해도 평가 등을 통해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상품공시를 개선하였으며, 단체보험 설명의무를 강화하였음.
- 제품 및 서비스 연계보험상품을 허용하였으며,³⁾ 이와 관련하여 단종보험대리점 제도를 도입하여 제품 또는 서비스 제공자가 동 보험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함.⁴⁾
- 보험회사의 불공정 보상행위에 대한 정의 및 제재 관련 내용이 보험업법에 포함되고, 보험사기 적발 시스템이 강화될 예정임.

1) 보험업법 제85조의3, 제86조, 제88조, 제90조, 제98조를 참조.

2) 보험업감독규정 제4-12조를 참조.

3) 휴대폰 보험이 그 예라고 할 수 있는데, 태블릿 PC, 디지털 카메라, 중고차 등과 연계된 보험상품 제공이 가능해짐.

4) 보험업법 시행령 제30조 및 제31조 참조.

- 아울러 보험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2014년 4월)에 따라 구속성 보험계약 체결행위(꺼기)에 대한 규제와 보험광고 규제가 강화되었으며,⁵⁾ 승환계약이 이루어질 경우, 자필서명, 녹취 등 증빙자료를 보관하도록 함(보험업감독규정 개정, 2014년 4월부터 시행).⁶⁾
- 과거 국내 보험산업의 공급자 또는 판매자 중심의 영업을 통한 양적성장이 소비자들의 보험상품에 대한 낮은 이해도나 신뢰도의 원인으로 분석되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판매과정의 건전화, 소비자의 이해도 개선을 위한 조치와 보상행위 관련 규제강화가 이루어짐.
 - 설계사 모집이력 관리시스템과 대형 법인보험대리점 경영공시 강화는 판매자의 불건전한 영업행위를 감소시킬 것으로 기대되며, 불건전한 영업행위로 인한 소비자 권익 침해를 상당부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소비자의 보험계약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보험상품 공시 개선은 소비자가 정보에 기초한 결정을 하도록 도울 것이며, 상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민원들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아울러 보험금 지급 및 산정 관련 분쟁이 소비자 민원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불공정 보상행위에 대한 규제 강화나 소비자에게 상품권유 단계에서 보험금 지급 예외 사례 제공 등은 소비자 신뢰도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한편 금융감독당국은 다양한 상품 개발과 보험회사 간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보험회사의 위험률 및 이율 결정 관련 자율성을 확대하겠다고 밝힘.⁷⁾
 - 위험률 중 안전할증률 범위를 기존 30%에서 확대할 수 있도록 하여 고령자, 유병자 등과 같이 위험률 예측이 어려운 집단을 위한 상품 개발을 용이하게 할 예정임.
 - 안전할증률 범위 확대는 보험회사가 사후 위험률의 불확실성을 감안하여 보험료를 책정할 수 있도록 하여 과거에 보장하기 어려웠던 위험 또는 집단을 보장하는 상품 개발을 가능하게 할 것이며, 장기적으로 이들에 대한 통계를 집적할 수 있게 하여 해당 위험률의 불확실성을 감소시킬 것임.
 - 예정이율 자율화를 통하여 보험회사들이 차별화된 보험료를 산출하고 회사 간 경쟁을 촉진하도록 하였으며, 공시이율의 조정범위도 공시기준이율의 10%에서 20%로 확대할 예정임.⁸⁾

5) 보험업법 시행령 제42조의4를 참조.

6) 보험업법 시행령 제43조의2를 참조.

7) 금융위원회(2014), 「보험혁신 및 건전화 방안」 참조.

8) 현재 공시이율 조정률 가감한도에 대해서는 보험업감독규정 제6-12조를 참조.

- 보험료적립금 계산에 사용되는 표준이율 산출 방식도 시장금리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변경함.⁹⁾
 - 공시이율 조정범위 확대와 표준이율 산출 방식 변경은 회사 간 금리경쟁을 촉진하는 동시에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 제고를 유도한다는 취지를 가지고 있음.
 - 금리연동형 보험상품의 보험료 적립금 계산 시 적용되는 공시이율의 조정범위는 2013년 4월 금리 과당경쟁을 경감시키기 위해 20%에서 10%로 축소되었으나, 상품 간 경쟁을 제한하고 보험회사의 리스크관리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 2014년 7월에 발표한 「보험혁신 및 건전화 방안」에 따르면 감독당국은 노후소득 및 사적연금 활성화를 위해 새로운 개인연금상품 도입을 추진할 예정임.
- 연금의 일정 부분은 연금수령을 의무화하되 나머지 부분은 자유로운 인출이 가능하도록 한 상품,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소비자에게 높은 연금액을 지급하는 상품, 그리고 고령자 특화 연금상품 등을 도입할 수 있도록 함.
 - 사망보험금을 연금으로 지급하거나 사망보험금은 적고 상대적으로 연금수령액이 많은 고령자 특화 연금상품도 개발하도록 함.
- 아울러 2014년 12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에 따라 퇴직연금 관련 제도 변화가 있었는데,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 및 퇴직연금 재정지원, DC형 연금 및 IRP 적립금에 대한 예금자 보호 등은 2015년부터, 퇴직연금 의무화 등은 2016년부터 시행될 예정임.
- 2015년부터 30인 이하 영세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는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를 도입하여, 동 기금에 참여하는 사업주에 대해 3년 동안 재정지원을 할 예정임.
 - 아울러 2016년부터 기업규모별로 단계적으로 퇴직연금 도입을 의무화하여 2022년에는 전면 의무화할 예정이며, 근속기간 1년 미만 근로자도 일정기간 이상 근무했을 때는 퇴직급여 가입대상에 포함될 예정임.
 - 이 밖에도 2014년 소득세법 개정으로 퇴직연금 세액공제가 확대되었으며(2015년 1월 시행), 2014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및 퇴직연금 감독규정 개정으로 연금자산운용규제가 완화됨(2015년 시행).

9) 기존 표준이율 산출식은 $3.5\% + \text{안전계수} \times \text{시장금리}$ 였으나, 변경된 산출식은 이율구간별 안전계수를 제시하여 시장금리를 더 잘 반영하도록 함. 자세한 산출식은 보험감독업무 시행세칙 제4-4조를 참조.

■ 한편 2014년 7월에는 보험회사의 리스크관리 수준 강화, 리스크 측정방식 정교화, 자기자본제도 개선, 보험부채평가 개선 등을 포함한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 제도 선진화 종합로드맵이 마련됨.¹⁰⁾

- 리스크 측정 시 사용하는 통계적 신뢰수준을 기존 95%에서 99%로 상향조정하였는데, 금리리스크는 2014년에, 신용리스크는 2015년에 50% 2016년에 100% 반영하여 상향조정되었음.
 - 개별리스크 간의 상관계수를 정교화 하였으며, 운영리스크 개선은 2016년에 이루어질 예정임.
- 보험회사의 자회사 리스크를 반영하기 위한 연결RBC 제도를 15년에 시행할 예정이며, 자체 위험 및 지급여력 평가제도(ORSA: Own Risk and Solvency Assessment)는 2015년부터 2년간의 시범운영을 거쳐 2017년에 시행할 예정임.
- 보험부채 평가와 관련해서는 2018년 도입될 IFRS4 2단계에 대비하기 위해 책임준비금적정성평가제도(LAT: Liability Adequacy Test)를 2014년부터 단계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며, 미보고발생손해액(IBNR: Incurred But Not Reported)제도 개선도 2014년부터 2년에 걸쳐 시행할 예정

■ 보험부채 시가평가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IFRS4 2단계 적용은 국내 보험회사들에게 큰 부담이 될 것으로 예측되는데, 재무건전성 제도 선진화 종합로드맵은 단계적 조치들을 제시하여 보험회사들이 이에 대비하도록 한다는 의의를 가짐.

- IFRS4 2단계가 적용되면 결산시점마다 위험률, 할인율 등을 재산출하여 보험부채를 평가해야 하므로 보험부채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보험수의 인식방법도 달라져 보험수의 규모도 축소될 것으로 예상됨.

■ 2014년 하반기에는 자산운용 대상 및 여력을 확대하고 보험회사의 해외진출 여건 조성과 자회사를 통한 자산운용 활성화를 유도하는 자산운용규제 완화가 이루어짐.

- 보험회사의 국내 사모전문투자회사(PEF)의 외화표시 지분 투자가 허용되었으며, 손해보험회사의 비상위험준비금¹¹⁾ 중 이연법인세는 지급여력금액으로 인정하도록 하였음.¹²⁾
- 보험회사가 해외 현지 일반 금융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해외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한 자회사 소유절차를 완화함.¹³⁾
- 아울러 보험회사가 사모전문투자회사를 자회사로 소유하고자 할 때 신고요건을 완화하였으며, 벤

10)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14. 7. 31),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 제도 선진화 종합로드맵 마련」.

11) 비상위험준비금은 손해보험회사가 대규모 재해로 인한 손해에 대비하여 적립하는 금액을 의미함.

12) 보험업법 시행령 제63조를 참조.

13) 보험업법 제115조와 보험업법 시행령 제59조를 참조.

처 투자조합 등의 자회사 관련 자산운용 규제를 완화하였음.¹⁴⁾

- 경제 저성장과 재무건전성 규제 강화가 보험회사의 수익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비효율화와 보유자산의 효과적 운용의 중요성이 부각되었으며, 보험회사 자산운용 규제 완화는 이러한 맥락에서 그 의의를 가진다고 할 수 있음.

- 2014년 보험 관련 제도 변화는 보험회사의 위험률 및 이율 결정 관련 자율성 확대와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 관련 규제 및 소비자 보호 관련 규제 강화로 요약될 수 있으며, 이는 국제적 금융감독의 흐름과도 부합된다고 할 수 있음. [kiri](#)

14) 보험업법 제106조와 보험업법 시행령 제50조, 제115조와 보험업법 시행령 제59조, 보험업감독규정 제5-13조의4를 참조.